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7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 박희승·정준호·한정애

김영진 • 복기왕 • 이기헌

서영교・김한규・김 윤

조계원 · 박상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기관임.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,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 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 연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음.

한편, 많은 국가와 기관의 연대 속에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. 이에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및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 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, 환경·사회·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·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·사회·지배구 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4항 중 "제2항제3호에 따라"를 "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"로, "고려할 수 있다"를 "고려해야만 한다"로 한 다.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	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	④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
관리 ·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	사업 외의 사업으로
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	
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	
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	
를 고려할 수 있다.	
	<u>고려해야만 한다</u> .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